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사업유형에 따라 종전보다 2년 또는 6개월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, 기본차령 기간에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.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0. 11. 18. ~ 12. 2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승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승합자동차	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	11년
	그 밖의 사업용	9년

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 표의 승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승합 자동차	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	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나목(종전의 가목) 본문 중 “기본차령(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)기간”을 “기본차령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 중 “법 제21조제12항”을 “법 제21조제13항”으로 한다.

가. 기본차령(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) 기간에 받아야 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5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

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(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차령 기간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진행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,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차령 연장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.

1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: 6개월

2.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: 2년

-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,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.

제3조(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본차령 기간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32